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2.17(월)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11.2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11.28.

라. 상정일자 : 2014. 2.10(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심사내용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완화하며,
-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부과·징수,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임대사업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필요한 예산, 인력확보, 관리요원 등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체결, 농기계 안전사용 예방을 위한 사전교

- 육 등 임대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 한정 및 임대조건과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농기계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기준 규정.(안 제9조)
 -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목적 외 사용, 양도,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에 임대계약 취소 규정.(안 제12조)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규정.(안 제13조)
 -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 임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는 임대의 제한 규정.(안 제15조)
 -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촉 및 해제 등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의무 등에 근거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8개구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임.
- 인천광역시의 2012.12월말 현재로 농업과 관련된 일반현황¹⁾을 살펴보면 농가가구는 13,724가구로 전국(1,194,715가구) 대비 약1.1%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9,652명으로 전국(3,117,322명)대비 약1.3%

1)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통계연보 참조

임. 또한 경지면적은 논(13,662ha)과 밭(6,744ha)을 합하여 20,406ha로 전국(1,715,301ha)대비 약 1.2%임.

또한, 농촌의 대표적인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비롯한 7종에 대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559대로 전국(1,786,732대)대비 1.2%이지만 강화 15,189대, 용진 2,545대가 대부분이며 그 외 자치구에서는 전체 3,825대가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인의 고령화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과 도시 근교의 소규모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은 임대기준, 임대료의 징수와 감면 및 반환, 임대계약의 취소와 책임 및 변상, 농기계의 반환과 임대의 제한 등 농기계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 조항이지만, 조례안의 별지 제1호 서식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명기되지 않아 농기계 사용자가 본 사안에 대해 임대차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여 계약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으로 사소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이는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고, 한편 민간 농기계 판매 및 대여업소 등 민간부문의 영업 활동에 침해는 없는지 등 민원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는 방안은? ⇒ 분점을 두는 방법도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허인환·이한구·윤재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제2조 본문을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 본문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2조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

안 제22조제2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

안 제22조제3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6호 서식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 (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이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 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절차) ① 시장은 사용자와 농기계 종류, 기간, 임대료, 조건,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농경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 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대사업 업무 담당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
2. 사용 신청대장
3. 임대료 수납대장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제9조제1항 관련)

구입가격	임대료(원) (1일 1대 기준)	비고
100만원 미만	3,000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7,000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6,000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00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34,000	
1,3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43,000	
1,600만원 이상 ~ 1,900만원 미만	52,000	
1,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61,000	
2,2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70,000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97,000	
4,000만원 이상	120,000	

※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표 (구입가격×0.3%기준)

※ 농기계 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